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의무화 등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6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2
2.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심의위원 위촉 의무화	5
 [참고자료] 심의위원회 위원 분야별 임명·위촉 현황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0.

3. 회부연월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사안 판단과 보호조치 설계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그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을 때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u>특수교육교원</u> ----- ----- ----- ----- ----- <u>다</u> 만,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 발의 당시 규정¹⁾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을 심의할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임의 절차로 두고 있었음.
- 그런데 위와 같은 전문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인 관계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발의되었음.
- 그런데 최근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률안²⁾이 공포되어 2027년 1월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82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7.1.1.] [법률 제21723호, 2026.6.2., 일부개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임.

2.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심의위원 위촉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1명 이상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⑥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 ----- ----- 이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u>「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이하 “특수교육교원”이라 한다)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2조³⁾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에서 관계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학교폭력·학생생활지도 담당 경력 교원, 학부모, 법조인, 의사, 관련 전문가 등 중에서 임명·위촉⁴⁾하되, 관할 구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검사·변호사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은 1명 이상을 반드시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학생의 의사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및 분쟁조정 전반에 장애 관련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기간	학교급	신고접수 건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	심의 건수	피해 학생수	가해 학생수
'22학년도 ('22.3.1.~ '23.2.28.)	초	18,920	12,814	6,106	7,629	9,140
	중	27,928	16,916	11,012	13,423	17,816
	고	10,879	6,502	4,377	4,923	6,662
	특수	149	119	30	32	67
	각종	105	65	40	43	47
	합계	57,981	36,416	21,565	26,050	33,732
'23학년도 ('23.3.1.~ '24.2.29.)	초	19,805	12,963	6,842	8,803	10,267
	중	29,007	17,212	11,795	15,036	19,754
	고	12,274	7,445	4,829	5,994	7,620
	특수	200	138	62	67	60
	각종	159	108	51	88	88
	합계	61,445	37,866	23,579	29,988	37,789
'24학년도 ('24.3.1.~ '25.2.28.)	초	16,805	9,396	7,409	9,015	11,191
	중	29,073	14,608	14,465	18,444	24,457
	고	12,293	6,449	5,844	7,211	9,091
	특수	182	128	54	127	56
	각종	149	86	63	72	99
	합계	58,502	30,667	27,835	34,869	44,894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 ⑨ (생략)

□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및 분쟁조정 전반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1명 이상 반드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의사 및 특성을 충실히 반영함과 아울러 장애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규정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 규정(2027. 1. 1. 시행 예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와 별도로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를 학교폭력 전문가보다 우선 위촉하면서 심의과정에 참여시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심의위원회 위원의 주요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기능 특성상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경우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특히 장애학생과 관련 없는 사항을 심의할 때 그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적용시점을 집행가능성 및 기존 위원의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시 특수

교육·장애인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위촉해야 하는바,

- ①개정안 시행 당시 궐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늘리거나, ②
법률상 상한으로 정수를 늘릴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⁵⁾되는 기
존 위원을 해촉하는 등 집행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 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등을 반드시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현행 특수 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 규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 시·도교육청(대전, 세종, 강원, 제주)

- ①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 규정이라는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②심의위원회 인원 확보 및 운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해당 전문가가 전문 분야와 무관한 사안까지 심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타분야 전문가의 위촉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문 의 처
02) 6788-5187

참고 1

심의위원회 위원 분야별 임명·위촉 현황

(단위: 명, 기준: '24년)

구분	교육지원청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	학부모	법조인	의사	기타 전문가
서울	19 3.7%	71 13.9%	130 25.4%	198 38.7%	71 13.9%	1 0.2%	22 4.3%
부산	5 2.0%	39 15.6%	49 19.6%	85 34.0%	35 14.0%	2 0.8%	35 14.0%
대구	5 2.3%	26 12.0%	82 38.0%	74 34.3%	8 3.7%	4 1.9%	17 7.9%
인천	5 2.3%	28 12.7%	49 22.2%	76 34.4%	40 18.1%	0 0.0%	23 10.4%
광주	2 2.1%	16 16.7%	20 20.8%	34 35.4%	8 8.3%	0 0.0%	16 16.7%
대전	2 2.0%	16 16.2%	20 20.2%	33 33.3%	14 14.1%	0 0.0%	14 14.1%
울산	2 2.0%	24 24.0%	21 21.0%	34 34.0%	10 10.0%	0 0.0%	9 9.0%
세종	1 2.0%	10 20.0%	16 32.0%	17 34.0%	5 10.0%	1 2.0%	0 0.0%
경기	29 2.6%	156 13.9%	325 29.0%	380 33.9%	107 9.5%	0 0.0%	124 11.1%
강원	23 4.7%	56 11.3%	138 27.9%	183 37.0%	29 5.9%	0 0.0%	65 13.2%
충북	16 4.0%	30 7.5%	75 18.8%	137 34.4%	18 4.5%	0 0.0%	122 30.7%
충남	15 3.9%	43 11.2%	91 23.8%	131 34.2%	19 5.0%	3 0.8%	81 21.1%
전북	14 4.2%	43 13.0%	83 25.1%	117 35.3%	20 6.0%	1 0.3%	53 16.0%
전남	23 4.0%	72 12.6%	126 22.0%	203 35.5%	14 2.4%	2 0.3%	132 23.1%
경북	19 3.1%	60 9.9%	221 36.6%	222 36.8%	21 3.5%	1 0.2%	60 9.9%
경남	11 2.6%	58 13.6%	110 25.7%	146 34.1%	21 4.9%	0 0.0%	82 19.2%
제주	2 2.0%	12 12.0%	27 27.0%	36 36.0%	7 7.0%	2 2.0%	14 14.0%
합계	88.4 3.2%	517.1 12.7%	911.2 26.5%	1,209.1 35.2%	390.1 7.5%	12.9 0.3%	336.4 14.5%